

5. 학생지도위원회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각 위원회설치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규수정)(2021.6.22. 개정)

제2조(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교양학부장 및 학과장 그리고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2.8. 개정)(2020.4.21. 개정)

② 학생지원처장이 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생과에서 그 실무를 담당한다. (2019.2.8.개정)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학생지원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2019.2.8.개정)

1. 학생들의 과외활동 사항
2. 학생단체의 예산, 결산심의 및 보조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과외활동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2. 출판분과위원회
3. 상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도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2019.2.8.개정)

제6조(분과위원회의 임무) ① 과외활동 및 예결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019.2.8.개정)

1.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단체의 예산결산심의 및 보조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과외활동 내용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단체의 시설과 비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② 출판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019.2.8.개정)

1. 학생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③ 상벌분과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의 요청에 따라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019.2.8.개정)

1.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
2.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7조(회의) 학생지원처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9.2.8.개정)

제8조(회의결과의 공개) ① 학생지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지원처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2.8.개정)

② 학생지원처장은 필요에 따라서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9.2.8.개정)

제9조(회의록) 학생지원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2019.2.8.개정)

제10조(관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